

# 최신 판례 예규

자경감면특례(조세특례제한법§69)의 자경기간 3년이 적용되는 농산물직불제규정§4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는 농산물직불제규정§5에 따라 경영이양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농업인이 소유한 보조금 지급대상 농지임

사전법규재산-511, 2023.10.24

## ■ 질 의

- (질의1) 조특령§66에서 「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직불제도 시행규정」 제4조의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농지를 판단함에 있어,
  - 동 규정 제5조제1항제1호(경영이양보조금의 신청대상자)의 10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 요건이 적용되는지 여부
- (질의2) 동 규정 제5조가 적용된다고 한다면 농림축산식품령의 연령은 ① "연 나이" 또는 ② "만 나이" 중 어느 것을 의미하는지

## ■ 회 신

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자경기간 3년이 적용되는 「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직불제도 시행규정」(이하 "농산물직불제규정") 제4조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는 「농산물직불제규정」 제5조에 따라 경영이양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농업인이 같은 규정에 따른 다른 지급요건을 갖춰 동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농지를 말하는 것입니다.

한편, 「농산물직불제규정」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청 대상자 요건 중 "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연령"의 나이 계산방법에 대하여는 소관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거주자 여부 판정 및 중국법인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문제(거주자는 국내외 전소득과세)

서면국제세원-3210, 2023.05.31

## ■ 질 의

- 거주자 여부 판정 및 중국법인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문제

## ■ 회 신

귀 질의와 관련하여 기존 해석사례(서면-2015-국제세원-0790, 2015.06.16.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○ 서면-2015-국제세원-0790, 2015.06.16.

거주자·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·직업·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,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2조의2 제1항 각 호의 시기로 하는 것입니다.

과세소득의 범위로서 거주자에 대하여는 「소득세법」에서 규정하는 국내·외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(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)하는 것이며,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「소득세법」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것입니다.

**세금계산서발급의무등위반자에 대한 명단 공개 대상은 부칙에 따른 법 시행 이후 범칙행위를 행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임**

사전법규재산-444, 2023.10.24

**질 의**

• 위 부칙의 해석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85조의 5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명단공개 대상 '세금계산서발급의무등위반자'를

-범칙행위시점과 무관하게 '22.1.1. 이후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,

-아니면, 세금계산서발급의무등위반 범칙행위시점과 유죄판결 확정시점이 모두 '22.1.1. 이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기획재정부에 세법해석 요청

○(질의)국세기본법 제85조의5 제1항 제5호의 세금계산서발급의무등위반자 명단공개와 관련하여 부칙에서 규정한 "이 법 시행 이후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부터"의 의미

(제1안)범칙행위시점과 무관하게 '22.1.1. 이후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부터를 의미함

(제2안)범칙행위시점과 유죄판결 확정시점이 모두 '22.1.1. 이후에 해당하는 사람부터를 의미

**회 신**

귀 법령해석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질 의 회 신 기 획 재 정 부 조 세 정 책 과-1910(2023.9.19.)

○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우리부 해석(조세정책과-422, 2014.5.23.)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○ 조세정책과-422, 2014.5.23.

-국세기본법 제85조의5제1항제3호 및 부칙

(2011.12.31.법률 제11124호)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 조세포탈범은 '12.7월 이후「조세범처벌법」에 따른 범죄를 행하고 그 행위를 원인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입니다.

Marketing Tax consulting

상속개시 이후 피상속인에게 추가로 배분된 직무발명보상금은 상속인의 기타소득임

**상속 개시 후 추가 배분 결정된 피상속인의 직무발명보상금은 상속인의 기타소득에 해당함**

소득세제과-715, 2023.08.09

**질 의**

• 상속 개시 후 지급된 직무발명보상금이 상속인의 기타소득 과세 대상인지 여부

**회 신**

상속개시 후 추가 배분 결정되어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 중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은 부분은 소득세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.